

商標使用秩序를 確立하자

特許廳 外國商標盜用 實態調查結果를 보고

編輯室

商標制度는 企業과 消費者間의 信賴關係를 바탕으로하여 公正한 去來秩序를 維持함으로써 企業을 發展시키는 同時에 消費者를 保護하는데 큰 役割을 하여왔다.

따라서 商標制度는 一定商品에 對하여 獨占排他權과 함께 그 商品에 對한 他人의 使用을 不容하는 禁止權으로서 商標權이 그 根幹이 되며 法的 保護까지 받고있어 商去來秩序의 確立과 商標를 통한 企業의 信用蓄積이 이루어져 消費者를 保護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商標는 國內外를 莫論하고 消費者에게 商品을 識別시키고 企業의 信用과 商品의 品質을 保證케하는 바로미터的 機能도 다함으로써 메이커나 販賣業者의 얼굴과도 같은 口實을 한다.

이와 같이 商標機能이 우리社會에 주는 比重이 莫重함에도 不拘하고 一部 企業에서는 他社와의 競爭에서 品質保障을 앞세운 商標管理에 力點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宣傳的 效果를 노린 商標管理를 해왔기 때문에 消費者들에게 自社商品을 深度있게 認識시키지 못하는등 올바른 商標制度의 活用이 未洽한 것도 事實이다.

더우기 一部 生産業者 또는 販賣業者가 關聯法規의 未熟知 및 認識不足등으로 登錄된 他人의 商標를 無斷使用하여 商去來秩序를 紊亂시킬 뿐 아니라 外國人の 著名商標를 주로 衣類 및 裝身具에 使用해서 消費者를 欺瞞하고 商標權者의 權利를 侵害함으로써 國際信義를 失墜시키는 事例가 있음은 매우 遺憾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직도 外國有名 商標가 붙은 外製品이라면 價格과 品質에 相關없이 無條件 사려하는 우리나라 消費者들의 奢侈消費性向에도 問題가 없지는 않다.

이와같은 誤謬된 商標使用秩序를 確立하기 위해 特許廳에서는 올해에도 外國有名商標를 無斷製造하거나 이들 製品을 販賣하는 一切의 不當行爲를 根絶시키는데 主眼을 두고 本會등 有關機關과 合同으로 全國 27個 主要都市를 대상으로 團束에 나선 結果 서울 地域의 146個 業所등 346個 業所에서 1,123件을 摘發, 해당 市·道에 通報하여 1次 警告토록하고 27個 製造業體는 關係機關에 告發措處했다.

特許廳은 또 이와 함께 앞으로 더 한층 團束을 強化해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 開催 以前에 商標使用秩序를 確立하기로 했다.

따라서 企業이나 販賣業者들은 此際에 自身の 社會的 位置나 責務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他人의 登錄商標를 正當하게 使用하여 商去來 秩序를 바로 잡는데 協調하지 않는한 消費者保護의 길은 전혀 트이지 않는다는 事實을 銘心해야겠다.

또 自己商標가 아닌 他人의 商標를 使用하려 할때는 반드시 當事者間이나 特許廳에 모든 法的節次를 밟아야만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만이 商標使用秩序가 確立될 것이다.

끝으로 生産이나 流通秩序에서의 根本的인 商標使用秩序의 善用 못지않게 重要한 것은 消費者들의 虛榮의 消費風潮의 自制가 商標使用秩序確立의 根幹이 된다는 것을 強調해두고 싶다. (W)